

일반손해보험의 도약을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쟁점

신 호 철*

<차례> _____

- | | |
|----------------------|---------------------|
| I. 머리말 | III. 보험중개사제도의 법적 쟁점 |
| II. 일반손해보험과 보험중개사 역할 | IV. 맺음말 |
-

주제어 : 일반손해보험, 보험중개사, 보험유통, 보험금회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선주책임상호보험(P&I) 중개사

<국문초록>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은 세계보험시장에서 18위(장기보험을 생명보험으로 합산 시) 수준으로 생명보험의 7위와 비교할 때 초라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반손해보험의 건실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선진국에서 유용성과 효율성이 널리 검증된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중개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일반손해보험 특히 위험인수의 전문성 및 고도성으로 인해 보험중개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업보험에서의 중개사의 기능과 관련된 사례를 열거 하였다.

선진국에서 보험모집의 핵심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보험중개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도 채 안 되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중개업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법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과 미비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먼저 보험중개업을 보험업법상 별도편제로 독립·구분하여 보험중개업의 위상을 제고해야 되고 중개사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회원사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을 보완·강화하여 중개사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중개사에 보험료 수령권, 고지와 통지수령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업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히스보험중개(주) 전무이사

- 논문접수일(2016.12.8), 심사개시일(2016.12.24), 게재확정일(2016.12.26)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공기업의 보험 입찰시 보험중개사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약을 철폐할 것도 제안하였다. 국내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역할은 재론의 여지없이 필수적이다. 모집채널 중 전문성과 고도성을 지니고 기업 편에서 보험회사와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보험중개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내보험산업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보험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 나가려면 보험중개사가 법적인 미비점 없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측면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I. 머리말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반손해보험¹⁾의 주요 기능은 기업의 재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일반보험 비중(시장점유율)은 너무나 초라한 실정이다. 국내시장에서의 일반보험 성장이 이와 같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손해보험산업 초창기에 외형 확장을 중시하는 경영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험회사 본연의 기능인 위험인수(Underwriting)²⁾보다는 오히려 유통(Solicitation)³⁾기능에 더 치중한데 기인한다. 그 결과 두 부문 간의 이해충돌을 초래함은 물론 위험인수(Underwriting)와 유통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2021년으로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⁴⁾ 시행에 대비하려면 외형

- 1) 기업이 재물 손실이나 중업원 상해의 결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해 주는 보험(케임브리지 인터넷사전의 정의에서 인용,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commercial-insurance>), 보험개발원에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을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https://www.kidi.or.kr/stats/general_result.asp), 일반보험 또는 기업(성) 보험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 2) 보험인수(Insurance underwriting)를 말함. 가망 보험계약자(기업)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담보범위를 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여 위험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행위를 말함. <https://en.wikipedia.org/wiki/Underwriting>
- 3) 보험모집 행위를 말함 <http://resources.lawinfo.com/insurance/kentucky/what-does-solicit-mean-in-insurance.html>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중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보험회계기준 명칭이다. 한국경제 2016년 11월 7일자 인터넷 판에서 인용.

보다는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반손해보험에서 유통 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보험선진국에서 이미 경쟁력과 효용성이 검증된 보험중개사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는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험중개사 위상이 시장에서 보험중개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괴리가 큰 것이 부인 못할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보험시장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보험중개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일반손해보험 유통구조에서 가장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의 발전방안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일반손해보험과 보험중개사의 역할

1. 일반손해보험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산업은 2014년도 기준 수입보험료로 세계 9위(US\$579억 43백만)수준인 것으로 집계·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장기보험⁶⁾(대부분 개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778271>

202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의 IFRS4를 대체하는 IFRS17 모델에 따르면 보험계약상 부채는 위험담보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때 할인율은 계약 체결 시 현행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가 계약 체결 시 정(正)일 경우 이를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적립하여 보험기간 중 상각하여야 함. 수입(Revenue)의 정의가 개정되는 등 새로운 손익계산서가 등장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보험부채 할인 시 현행 이자율 적용으로 막대한 보험부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016년 12월 27일자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IFRS_17)

- 5) 대가를 받고 보험 상품을 판매, 모집 또는 협상하는 직업을 말한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Insurance_broker

- 6) 장기손해보험을 말하며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고 보장기능 외에 적립부분(저축보험료)이 포함되어 있어 만기에 도달할 때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저축기능이 부과되어 있음. 출처: 보험연구원 KIRI Weekly 2012.9.3. 13면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김동겸 선임연구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연계계약이라 한다.) 1년 미만은 단기보험계약, 1년을 넘는 것을 장기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장기보험에는 보험계약의 구조자체가 장기 인 것(장기종합보험)도 있으나, 원래 1년 계약용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특약에 의해서 장기화시키는 일도 있다. 단기 보험계약에서 적용되지 않은 만기환급금 지급은 장기보험의 특징의 하나이다. 인터넷 보험신보 보험용어사전. <http://www.insweek.co.kr/>

장기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인보험(상해, 질병 등)과 물보험(운전자, 재물 등)으로 구성되며 저축성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담보 내용에 있어 가계성보험으로 생명보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무방하다.

질병담보 및 저축성 보험료) 실적에 해당하는 US\$413억 13백만을 생명보험 실적으로 합산하면 실제로는 US\$166억 33백만이며 순위도 9단계가 내려간 세계 18위 정도의 시장규모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실적에서 가계성보험⁷⁾ 중목인 자동차보험 US\$103억 14백만까지 제외한 순수한 일반보험 실적은 US\$63억 19백만으로 이는 대만의 US\$141억 54백만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세계27위를 기록한 터키(US\$101억 19백만, 자동차보험료 미감안 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산업은 US\$1,428억 85백만으로 증가하게 되어 순위가 세계 7위로 상향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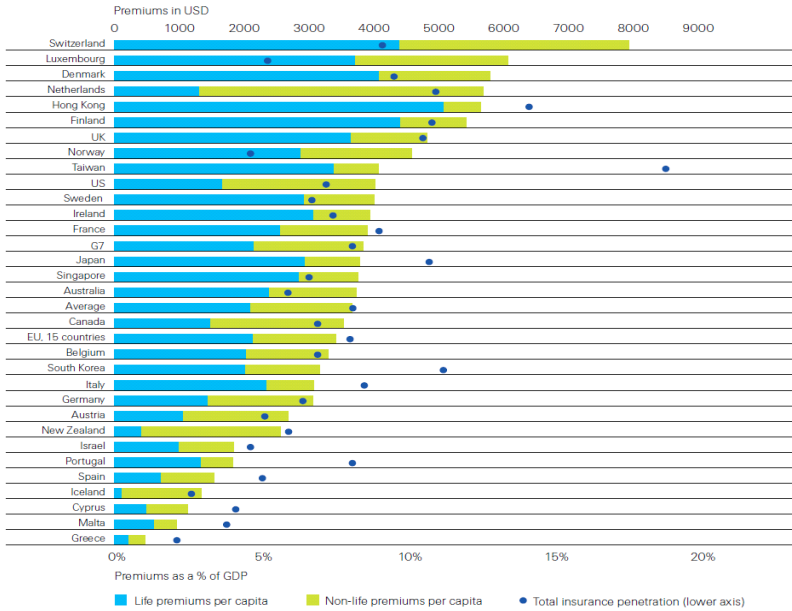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세계 순위(2014 수입보험료
(단위: US\$1백만)

구분	생보	순위	손보	순위	합계	순위	점유율
미 국	528,221	1	752,222	1	1,280,443	1	26.8
일 본	371,588	2	108,174	5	479,762	2	10.0
영 국	235,321	3	115,945	4	351,266	3	7.4
중 국	176,950	4	151,490	2	328,440	4	6.9
프랑스	172,761	5	97,759	6	270,520	5	5.7
독 일	118,475	7	136,170	3	254,645	6	5.3
이탈리아	145,292	6	49,443	10	194,735	7	4.1
한 국	101,572	8	57,943	9	159,515	8	3.3
캐나다	52,138	12	73,235	8	125,373	9	2.6
네덜란드	21,855	24	74,100	7	95,955	10	2.0

출처: Swiss Re Sigma지, 2015 제4호, p36,38,40
한국의 손해보험(대한손해보험협회 2015년 발간)에서 재인용(120면)

7) 기업보험 이외의 개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생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영국개인소비자보험법 2012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2012) 제1조 (a)항

<표 2> 주요 국가의 보험밀도와 침투도(Insurance Density and Penetration 2014)



출처: Swiss Re Sigma지, 2015 제4호, p19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US\$3,163 이고 총 보험료를 명목GDP로 나눈 보험 침투 도는 11.3%⁸⁾로 세계 상위권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대비 손해보험의 비율은 2:1로 양 부문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축성 보험료를 생명보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4:1이 되어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의 빈약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중개사 역할과 중요성

일반보험에서 담보하는 기업 위험은 내재된 전문성 및 고도성 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 전문지식을 적용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매우 수준 높은 분야라 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기업 위험관리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전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연고나 자금 지원 등의

8) 보험개발원 KIRI Weekly 2015.7.6. 5면

이해관계를 매개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차후 사고 발생 시 보험 담보 공백이나 보험금 회수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종목인 것이다.

기업보험의 특성은 사고 발생 후 클레임(보험금) 회수 과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줄지에 을의 입장에 서게 되어 매우 난감해 하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일련의 계약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법인영업부(직급)영업) 직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조건과 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영업부 직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업무부 직원¹⁰⁾에게 보험계약 자료를 가져와 언더라이팅 담당 직원이 제반 계약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기술이 일천하여 주로 해외의 재보험자에게 의존하여 제반조건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¹¹⁾ 요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일반보험에서 관련 기업의 위험을 파악하여 보험증권의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보험중개사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즉 각기 다른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알맞은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하는 바 위험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보험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상법상 중개인과는 차이가 있다. 상법상 중개인은 단순히 해당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중개사는 계약의 관리까지 업무에 포함된다. 또 상관습법상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과 관리 업무를 취급 한다는 점과 보험자에게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²⁾ 다만 상법상 중개인 규정이 보험중개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보험회사 임직원에 의한 영업

10) Underwriter라고 한다.

11) 이것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고 한다.

12) 유주선,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7권 2호 (2013) 16면

3. 외국에서의 보험중개사 법적 지위

(1) 미국

미국 뉴욕 주 보험법 제2101조는 “보험중개인이라고 함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보험이나 연금계약을 권유·교섭·주선하는 제 행위 또는 위험을 인수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 대가로 보수·수당을 수수하는 개인·영리단체(firm)·협회(association)·회사(corporation)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반대약정이 없는 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위한 채약대리권을 갖는다.¹³⁾

또한 뉴욕 주 보험법에서는 소정의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자기 외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교섭 또는 주선하거나 위험의 판정 또는 보험가입에 조력하는 자라 하여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모집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⁴⁾

(2) 영국

영국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는 전업직종의 보험전문가로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한다.

또한 영국법상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함께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중개사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중개사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¹⁵⁾ 영국 보험법(Insurance Act 2015)에 따르면 기업보험(Non-Consumer Insurance)¹⁶⁾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

13) 이성남,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4, 270면

14) 이성남, 앞의 논문 271면

15) 영국보험법 2015 (Insurance Act 2015)에서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53(1)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종전대로 보험중개사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다.

16) 영국개인소비자보험법 2012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2012) 제1조 (a)항에서 ‘개인소비자 보험계약’이 정의되어 있음.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생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개인소비자보험계약이 아닌 모든 보험계약 (Non-Consumer Insurance), 영국보험법 2015 제1조에서 정의되어 있음.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2012』

1. Main definitions

“consumer insuran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f insurance between-

적으로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관련 조문의 명확화, 담보¹⁷⁾위반 시 보험자 면책 제한,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계약 종료권 효력 발생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도 고지의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뒤엀킨 대량의 자료제공¹⁸⁾으로 보험자가 제대로 언더라이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였다.

보험자에게는 상투적 약관¹⁹⁾을 삽입하여 보험계약자 즉 양자 간의 합의로써 신규 발효된 보험법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조치²⁰⁾를 취하지 못 하도록 기업보험에 대하여 사전에 정형화된 양식²¹⁾을 적용하도록 개정 되었다.

중개사가 자력으로 당해 보험계약자가 아닌 여타 거래처와의 업무관계로 취득한 정보는 당해 보험계약자가 제공하는 고지의무 관련 대비비 정보에서 제외 시켰으며 로이드 시장과 중개사에 대하여는 본 영국보험법의 적용을 배제 하였다.²²⁾

4. 우리나라 보험중개업

2016년 7월 현재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123개 이고 이중 법인 보험중개사는 99개, 개인 보험중개사는 24명이다.²³⁾

우리나라 보험중개사 제도는 1977년 보험업법상에 규정만 된 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1997년 4월 뒤늦게 도입된 제도²⁴⁾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

(a) an individual who enters into the contract wholly or mainly for purposes unrelated to the individual's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and

(b) a person who carries on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who becomes a party to the contract by way of that business.

"consumer" means the individual who enters into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proposes to do so

「Insurance Act 2015」

1. Insurance contracts: main definitions

"consumer insurance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f insurance that is not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17) Warranty 라고 한다.

18) Dta dumping 이라고 한다.

19) Boiler plate 약관 이라고 한다.

20) Contracting out 라고 한다.

21) Default regime 라고 한다.

22) Clyde & Co, Insurance and Reinsurance Update, Clyde & Co, February 2015, p3

23) 한국중개사협회 제공 자료(<http://www.ikiba.or.kr/>)

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으로 보험업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그런데 보험중개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체결을 중개할 뿐 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체결권·고지수령권·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당초 보험중개사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은 독립대리점제도 정착, 세대별 보험가입률 70% 이상, 요율 자유화, 국내 우선 출재제도 폐지였으나 동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도입되다 보니 보험중개사의 업무 영역을 일단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먼저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회사나 대리점 또는 설계사와 동일계약에 대해 동시에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보험회사 간에는 공동인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면서 유독 보험중개사에 대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1997년 당시 유통 조직에 보험중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래 시장 상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개정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험 당국에서는 보험중개인에 대해 다양한 업무 범위에 비하여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개수수료의 과당경쟁 및 국내 보험계약의 해외유출로 인해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²⁴⁾

계약자의 입장에 서서 기업 위험을 자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최적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클레임이 발생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자문하고 클레임을 책임지고 회수하여 주는 보험중개사 본연의 역할이 당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보험중개사에 대해 원수보험료의 수령이 금지되었으며 도입 초기 단계부터 보험회사의 특수 유통 조직의 하나로 분류되면서 그 본령인 원보험 중개 기능보다는 재보험중개 기능에 제약을 덜 가하는 변형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또 이는 원보험 중개보다 재보험중개에 관심이 많은 외국 정부의 입장

24)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25)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보험감독원 1998.3. 380면.

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보험료 수령권이 있고 재보험금도 회수하여 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원보험 중개 부문과 크게 대비된다 하겠다.

다만 당국에서는 보험중개사에 대해 기존의 모집 조직인 모집인,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요율 등 보험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보험중개사가 유통 조직 중 직급과 경쟁을 하는 기업성 보험(Non-consumer insurance) 전문 조직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 영역 규제는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일면 수공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 중 일부는 규제 요인이 해소된 분야도 있고 일부는 보험중개사 도입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법규·규정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적기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험중개사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2014년도의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와 손해보험사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2014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공동인수	중개사	방카슈랑스	합계
2014	13,984,492	21,334,927	31,533,538	103,615	617,597	9,003,301	76,577,470
화재	5,611	43,833	194,353	5,839	4,938	56,063	310,637
해상	379,333	3,603	276,343	3,355	71,502	166	734,302
자동차	4,167,461	2,626,552	6,639,197	45,788	45,491	23,932	13,548,421
보증	651,956	-	854,715	-	-	8,445	1,515,117
특종	2,146,788	287,166	1,544,196	48,633	410,325	561,991	4,999,099
해외원보험	208,347	-	374,869	-	-	-	583,216
장기	291,411	16,722,133	19,495,608	-	57,317	7,838,438	44,404,906
개인연금	482,472	1,479,470	1,615,530	-	18,180	514,265	4,109,917
퇴직	5,651,115	172,170	538,727	-	9,844	-	6,371,856
합계	13,984,492	21,334,927	31,533,538	103,615	617,597	9,003,301	76,577,470

출처: 보험개발원 통계연감 2015

<표 4> 주요 손해보험사 종사자 현황(2016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명, 개소)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임원	직원	소계		
메리츠	31	2,110	2,141	16,747	2,577
한화	34	3,117	3,151	31,569	2,186
롯데	18	1,557	1,575	2,700	1,201
엠지	21	706	727	4,094	779
흥국	21	1,356	1,377	5,718	968
삼성	62	5,824	5,886	41,713	4,942
현대	54	3,948	4,002	21,869	7,041
케이비	30	3,290	3,320	14,986	4,271
동부	35	4,718	4,753	24,489	5,015
농협	7	670	677	1,369	153

출처: 손해보험 2016년 6월호 129면

주요 손해보험 10개사의 직급 인원은 임원 313명, 직원 27,296명 총 27,609명이며 설계사는 165,254명, 대리점은 29,133개이다. 동 대리점의 전속, 독립 여부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험중개사는 약 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 보험중개사의 중요성 (사례중심으로)

일반보험 시장의 도약을 통해 국내 손해보험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면 보험중개사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보험의 기업위험 관련 전문성 및 고도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입장에 서서 보험사와 지식이나 경험 면에서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은 보험중개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을 맞아 이제는 보험중개사 제도가 일반보험 유통의 핵심 조직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과거 1970년대에 가계성 보험에 정책적 배려를 하였듯이 보험중개사의 활동영역도 이제 현실에 맞게 정책적 배려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보험에서 보험중개사가 계약체결 과정 및 재보험금 회수 과정에서 수행하

는 기능을 보면 우선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중개사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험조건과 관련 위험평가자료²⁶⁾를 재보험자²⁷⁾에게 제시하여 요율과 인수금액²⁸⁾을 산출하게 하고 제시 받는다.²⁹⁾ 즉, 재보험자가 할 일을 대신 해주어 효율적으로 재보험자의 인수심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재보험자³⁰⁾에게는 인수 한도가 부여되어 있고 간혹 과당경쟁으로 요율을 제시할 수 없는 재보험자가 요율을 제시하여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여 위험하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31)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보험중개사가 이 위험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시 조기 경고 해주는 것이 보험중개사의 법적 의무이다.

일례로 휴대폰 분실보험을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중동 걸프(Gulf)지역 국가 자본 소유의 베스트리(Best Re)에 90% 이상 출재한 적이 있는데 동 재보험자가 2011년 태국 홍수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상당 금액의 재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³²⁾

또한, 선박건조보험 선수금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보험, 이하 RG보험이라 칭함)에서 B 손보사 등 3사는 모두 90%에 달하는 재보험 출재를 재보험중개회사에 소속된 브로커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여

26) Underwriting Data 라고 함, 재보험자 슬립(Reinsurance Slip), 위험평가 및 분석자료(Risk Evaluation and Analysis Data) 등이 있음.

27) Reinsurer 또는 Reinsurance Underwriter 라고 함.

28) Capacity 또는 Reinsurance Share 라고 함

29) 국내 소재 기업물건의 경우 국내 원수보험자가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 중개사가 제시해 주어야 하나 국내 원수보험자는 아직 요율 제시 능력이 없는 수준이다.

30) 재보험자 중에는 요율을 산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Quoting 재보험자와 단지 제시된 재보험 슬립을 보고 일부만 인수하는 추종(Following) 재보험자로 구분되며 전자로는 Swiss Re 또는 Munich Re가 대표적이며 후자로는 인도의 GIC Re 또는 바레인의 Trust Re가 있다. GIC Re의 경우 반드시 Quoting 재보험자의 재보험 슬립을 제시하여야만 이를 근거로 재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31) 휴대폰 분실보험을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Best Re)에 중개한 말레이시아 현지중개사의 관계회사는 이후 서울에 지점을 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이다.

32) H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말부터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Best Re)와의 휴대폰 분실보험 재보험금 청구 소송이 마무리돼 합의금액을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베스트리는 H손보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으며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이 벌어졌었다.

H손보는 재보험자인 베스트리의 경영 및 재무상황, 다른 재보험금 청구현황 등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 공시 당시 재보험금이 847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핸드폰 분실 보험금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유는 SK텔레콤 보험의 모델해저드가 심했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낮고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머니투데이 2014. 09. 03]

야 했다.³³⁾

상기 2가지의 클레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보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관련 업무는 그 규모가 통상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문학적인 규모일 뿐만 아니라 잘못될 경우 회사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특징이 있다. 휴대폰 분실 보험 건은 일개 재보험회사에 90%를 출재 하였는데 이는 위험분산 차원에서 통상 하나의 재보험자에 30% 이상을 출재하지 않는 관례(Market practice)를 크게 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RG보험의 경우에도 90% 출재를 하면서 정말 로이드 재보험자인지 철저한 확인을 등한시 한 것으로 보인다.³⁴⁾ 물론 당시 국내시장에서 보유를 기피하여 부득이 90%에 달하는 출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재보험자에게 90%이상 출재 하는 건에 대한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H손보사는 동 RG보험을 제시 받고서³⁵⁾ 재보험자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브로커 A씨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 수천억 원 손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동 사례를 보면 원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원수보험중개사의 활동 영역을 제약한 데 따른 공백을 브로커 A씨가 악용한 데 일부 기인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하여 동일계약에 대해 직급과 중개사로 하여금 동시취급을 허용했다라면 두 유통채널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A씨의 사기행각을 쉽사리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또는 조언 과정이 없어 사고 일 이후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서 통보³⁶⁾를 하면서 선박보험금을 청구하

33) 브로커 A씨는 B화재 등으로부터 영국 로이드 등과의 RG 재보험 거래중개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무등급 저 신용 재보험사들(카자흐스탄 및 서인도제도 소재)과 거래를 체결했다. 급기야 국내 손보사들에게 위조한 로이드 재보험자 슬립을 제출하며 사기사실을 숨겼다.

Marc J. Pearlman and Jason P. Minkin, "The Role of the Reinsurance Intermediary: Duties and Liabilities", LexisNexis. NY. American Bar Association. Vol. 13. 2003.4. Coverage6 (p4)

34) 당시 시장에서는 동RG보험과 관련하여 언더라이터간에 한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동 종목이 일반손해보험인지 아니면 보증보험인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동 RG 사태이후 RG보험은 서울보증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35) 상기 브로커 A씨가 재보험은 90% 확보되어 있으니 원수증권을 발행하라고 직급 영업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36)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는 클레임 사례도 있었다. 37) 이런 사례는 당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중개사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사전에 위험관리를 통해 당해 선박이 특수전쟁수역에 진입한다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이며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전쟁 추가보험료를 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관련기업 측에서는 전쟁보험금을 담보 받았을 것이다. 또한 사고일 이후에 배서 통보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면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이는 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써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배상책임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위험조사 단계에서 설계변경, 과적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 이를 자문을 통해서나 또는 보험조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며 이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위험관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집채널인 것이다.³⁸⁾

통지(declaration)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 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합보험증권과 같이 보험 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보험신보 보험용어 사전

이 경우 뒤늦게 보험조건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http://www.insweek.co.kr/dictionary/view.php?ind_sel=han&index=바&no=406&qu=

37) 1982년 8월 9일 당시 이란, 이라크가 전쟁 중인 페르시아 만(Persian Gulf)에서 삼보해운(三寶海運) 소속 삼보배너호는 이라크의 미사일에 피격되어 선체는 대파되고 13명의 선원이 사망,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보사인 동양화재에 미화 520만 불의 선박보험에 가입된 동 선박은 1982년 8월 10일부터 7일간 특수수역의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선박전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자(삼보해운)는 전쟁보험 가입 후 피격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함에 따라 사고 후의 보험가입 사실여부도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소송으로 비화하였다. (선박보험의 전쟁위험은 세계통상수역(특수전쟁위험수역 제외) 항해조건으로 1년 기본증권에 가입하고 전쟁수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부가보험료(1주일)를 납입한 후 담보 받는다). 당시 선주는 8월 10일 오전 국내뉴스 방송에 외신보도가 난 직후 전쟁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8월 10일에 미사일을 피격 당한 것으로 주장,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80년대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항만청장(당시는 계엄 하로서 육군중령이 재임)이 발행한 8월 10일자 출항 확인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여 보험자 측이 패소하였으나 우연히도 동일 날짜에 리투아니아(당시는 소련 연방국으로서 적성국으로 직접 교신 불가) 선적 선박도 같이 피격된 사실이 로이드사고 일지(Lloyd's Loss Book, 전 세계 선박 사고는 전부 실시간 기록, 세월호도 기록되어 있음)에 등재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경찰(인터폴)에 사고일자를 조회된 결과 밝혀져 사고일자가 8월 9일이라는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보험사가 2심에서 승소하였고 1985년 7월 9일 대법원은 계약자 측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선박보험금지급을 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국 로이드 시장에서는 한국보험업계의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동 관결을 계기로 한국의 사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쾌거였다. 당시 대한재보험(코리아리 전신) 고용경 해상보험부장의 노고에 힘입은 바 컸었다.

기업보험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직급 영업사원이 담당하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의 손해사정 부서로 클레임 업무가 이관 되고 이는 다시 손해사정업체로 하청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손해를 입은 기업의 담당자로서는 계약 담당 직원이 아닌 클레임 담당 직원 및 손해사정 담당자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보험가액 평가³⁹⁾ 및 보험증권의 담보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해박한 전문지식을 지닌 보험전문가가 아닌 기업의 담당자로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보험금 지급 여부도 조언 받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으로서는 위험관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집 채널을 필요로 하는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로 보험중개사가 이 기능을 담당하여 기업에 대한 전문적 보험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크레인 전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약관상의 해석 차이로 거부당한 기업에게 보험중개사가 제대로 안내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번이라도 겪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보험중개사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일반손해보험의 유통은 클레임 회수로 완결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 시 보험금 담보 여부에 대해 우군이 없이 약관 해석 등에서 씨름해야 하는 불완전한 유통 구조를 선택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원래 손해보험 발전과정에서 인수와 유통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한 회사가 수행 하는 구조로 지속되어 오면서 이해충돌 상황을 피하고자 자연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이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⁴⁰⁾ 현행 보험 유통

38) 2014.4.16.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 증대를 위하여 세월호를 불법으로 중·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 상태를 야기한 점을 들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한국선급(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은 선박의 개조와 운항과장(감항능력)에 관한 필수적인 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적합판정을 내렸으나 중간에 보험중개사가 개입 되었다면 안전진단과 과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것이다. 런던 선박보험자에게 있어서 선령 20년의 고령선의 개조·증축은 인수 기피나 고율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기 때문이다.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에 따르면 15년 초과 선박은 선급이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원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페리선(무게 중심이 벌크선 대비 상부에 위치)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여객·차량·화물 복합수송 페리선에 대한 개조·증축 사항은 당연 인수 거절 대상이다.

39) 손해보험에서는 보상 기준이 사고를 당한 때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이를 미평가 보험이라고 함

40) 손해사정업체는 계약을 주는 손보사에 대해 자기점열을 실시 한다는 불만이 늘 제기 되어 오고 있다.

구조에서 보험계약 체결과정과 보험금 회수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통 조직으로는 보험중개사가 유일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보험 종목은 기업 위험의 고도성과 거대성으로 인하여 재보험이 수반되는 협의요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그 업무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재보험 중개사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담보 조건의 해석에서 책임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원보험 중개사의 활동 영역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일반보험의 모집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험중개사 조직의 우월성과 유용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동시에 중개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적극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리다 하겠다.

Ⅲ. 보험중개사제도의 법적 쟁점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인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이 위험분산이라는 기능은 재보험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⁴¹⁾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국내 상법이나 보험업법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중개사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모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상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의무 또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를 같이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이다.

1. 보험중개사제도의 보험업법내 분리·독립 편제

보험 산업의 인수 및 유통 양태 축에서 보험회사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보험중개사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험중개

41)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29면

사 제도와 관련된 독립 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데 상법에는 중개와 보험이 따로 기본적인 상행위로만 규정되어 있다.⁴²⁾ 현 보험업법의 편제는 인수와 모집을 보험회사만이 취급하던 다시 말해 보험중개사 제도가 없었던 당시의 국내보험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관련 상행위의 양대 축으로서 보험업(Underwriting)과 보험중개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보험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보험중개업을 보험업법상 별도 편제로 독립·구분하여 일반보험의 유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배려해 줘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상 유통 조직 편에 모집을 규정한 모집인이나 대리점 편이 아닌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의 보험중개사 편을 독립시켜 편제함으로써 기업위험 또는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보험중개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측면에서 배려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중개사 조직은 보험회사의 종속개념이 아닌 독립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질 것이다. 또한 보험중개사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도 확실한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 한다.

2. 보험중개사협회 내의 윤리위원회

보험중개업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중개사 업계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보험중개사협회 내에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심의 및 제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RG 사례로 브로커 A씨가 구속되는 등 중개업계의 평판에 흠이 가는 사태가 있었지만, 협회 자체로는 아무런 제재 실적도 없어 업계 자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개사협회 자발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책 당국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독 당국에서 보험업법 제178조(그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③항 1호⁴³⁾ 에 의거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 감독업

42)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중개에 관한 행위; 17. 보험

43)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 질서 유지

무 시행세칙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물론 동 위원회에 감독당국에서 당연위원으로 참석한다면 상시 감독도 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⁴⁴⁾는 RG 사태 이후에 제정된 영업기준이다. 동 영업기준 내용이 현재 신규 보험중개사 등록 시 구비서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⁴⁵⁾ 영업기준 제정 이전의 절차만으로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항 역시 감독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기 등록된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우선 서면검사를 통해서라도 시행 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차제에 동 영업기준을 등록 허가기준으로 격상하여 중개사의 부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보험료 수령권

상법에는 보험대리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⁴⁶⁾ 정작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그러나 상법상 중개업에 대한 규정에서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다.⁴⁷⁾ 계약 체결에 있어 중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사실행위의 하나이며 상법에서는 기본적 상행위로 중개에 관한 행위와 보험을 규정⁴⁸⁾하고 있고

44)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45) 예를 들면,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관련 이행계획서 등을 말한다.

46)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하생략)

47) 상법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험 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도 보험중개업이라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직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험중개인의 조항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보험업이 태동한 영국, 미국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보험중개인의 보험료 수령 권을 인정 하고 있는바⁴⁹⁾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서도 보험중개인의 보험료 수령 권을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해외출재보험이나 해외수재보험의 재보험 중개 시에는 보험중개사가 재보험수수료를 수령하고 여기에서 재보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재보험자에게 송금하고 있다. 국내 법규상으로는 동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단지 해외재보험시장 거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기업관련 국내·외 보험거래를 담당하는 보험중개사가 부동산중개인만도 못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⁵⁰⁾

보험중개사의 재보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재보험료는 수령 즉시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송금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감독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중개사가 기능 수행 과정상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⁵¹⁾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장상황에 맞게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상법은 보험료의 수령이나 환급 등에 관한 권한을 중개사에게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위와 기능을 보완해 보험자가 중개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48)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중개에 관한 행위; 17. 보험

49)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3조(1)항 (중개사를 경유한 보험계약체결) (Policy effected through broker) (1) 중개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책임을 진다.

(1) Unless otherwise agreed, where a marine policy is effected on behalf of the assured by a broker, the broker is directly responsible to the insurer for the premium, and the insurer is directly responsible to the assured for the amount which may be payable in respect of losses, or in respect of returnable premium.

50) 영국 독일 미국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 산업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보험계약법으로 분리·독립시키고 있다.

51)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보험중개계약의 개설 및 신고) ③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제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필요하다.⁵²⁾

아울러 고지와 통지수령권도 중개사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중개사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전 의무로서 고지사항이나 보험사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인 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보험자가 고지나 통지수령권을 중개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고도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위임한 것이므로 보험업법이나 시행령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⁵³⁾

또한 중개사 본연의 권리인 보험료 수령권 역시 중개사제도를 인정한 본래 취지를 반영하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제1항⁵⁴⁾을 개정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재 국가기관 및 유관단체는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법)’에 의하여 공정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공기업⁵⁵⁾의 보험입찰 시 오직 보험회사만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중개를 할 권한이 부여된 보험중개사에게는 참여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있다.

동 국제법은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5.7.6. 제정된 법률로 이후 보험중개사제도가 1997년 4월 도입된 후 이를 동 국제법에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아직도 관련 조항 개정이 안 되고 있어 중개사 업무영역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조달청(Crown Commercial Service)에서는 일괄계약(Framework Agreement) 시스템⁵⁶⁾을 도입하여 보험용역 계약 체결에 보험중개사

52) 유주선,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제7권 제2호, 2013, 21면

53) 유주선, 앞의 논문 22면

54)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 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중개사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하생략)

55) 공공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56) 우리나라는 KONEPS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단지 보험중개사를 참여시키

를 참여시키고 있다.⁵⁷⁾ 우리나라도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중개사의 입장을 반영해 줌으로써 국·공기업 계약의 상업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입찰은 모집에 있어서 꽃이고 모집의 꽃은 중개라 할 수 있는데 정작 국가계약자가 모집조직의 핵심채널인 보험중개사의 전문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6. 손해사정업의 겸업 허용

원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주 수입원이 특정보험회사인 손해사정사 에게만 의뢰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의 이익에 편중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보험중개사는 현재 원보험금 청구 업무 보다 더 복잡한 재보험금 회수 업무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고 있다. 대리점에게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조언권이 없고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대행권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손해사정업이 허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여 이제 보험중개사에게도 손해사정업의 업무를 허용해 줄 시기가 도래 했다고 본다.

7. 선주책임상호보험(P&I) 중개사에 대한 감독

현재 선주책임상호보험⁵⁸⁾은 보험업법에 선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신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The Korea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이하 Korea P&I Club 또는 KP&I라 칭함) 설립에 관한 법이다. P&I 보험은 국경간

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The Law and Economics of Framework Agreements」 Gian Luigi Albano, Cambridge Publishing, 2016, P43

57) 보험사 그룹, 보험중개사 그룹 등 4개 그룹(4 Tiers)으로 구분하여 정부 계약의 체결에 따른 제반 위험 관리를 보험중개사에게 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보험중개사가 정부라는 거대한 보험계약자의 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http://ccs-agreements.cabinetoffice.gov.uk/contracts/rm3731> 참조

58)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이하 P&I 보험이라 칭함), 선박의 운항(소유자, 용선자, 기타 선박 운항업자에 의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선박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선박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각출한 기금으로써 상호 보상함. 정기용선자 및 슬롯(slot)용선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함.

거래⁵⁹⁾가 허용되는 보험으로서 국경간 거래허용 대표종목인 선박보험과 동등한 법적 정비를 받아야 하나 상법 보험 편에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이 증가 하고 있다. P&I보험은 약관의 준거법을 영국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6년 8월 12일자로 영국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발효되어 이에 따른 국내에서 후속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P&I보험 중개사는 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보험업법의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보험업법을 개정⁶⁰⁾하여 P&I보험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포함시킴으로써 P&I보험중개사를 감독 체제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국내중개업의 충실한 역할 수행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보험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보험선진국처럼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편을 별도로 독립·편제하여 보험중개업이 제도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받으면서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될 것이다.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의 영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향후 보험중개업이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중개사윤리위원회를 협회 내 상설 기구로 설치하거나 보험업 감독규정이나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중개사윤리위원회를 별도기구로 설치함으로써 회원들의 모집질서 위반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다. 권익보호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엄격하게 부여해 나가야만 보험중개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이 철저하게 준수 되도록 감독을 강화하

59) 이를 Cross border 종목이라 한다.

60) 보험업법 제1조의2(보험 상품)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여기에 P&I 보험을 포함시키지는 제안이다.

고 이를 허가기준으로 격상할 것인지도 차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중개사의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주고 있는 보험료 수령권 불인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 입찰시 보험중개사 참여 배제 등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이다. 보험계약 중개 업무를 수행 하면서도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보험중개사의 지위와 기능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국·공기업의 보험 입찰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시급히 완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보험중개사의 손해사정업 겸업 허용, P&I 보험중개사의 감독체계 편입 등도 향후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국내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역할은 재론의 여지없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집 채널 중 전문성과 고도성을 지닌 기업보험을 전문지식을 갖고 기업 편에서 보험사와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보험중개사 외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 산업이 전전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전문 조직인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만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보험중개사가 제대로 판을 벌릴 수 있도록 법적 규제나 미비점에 대한 과감한 개선조치로 큰 물꼬를 바꿔줘야만 할 것이다.

보험중개사도 영세성을 탈피하여 기업화·대형화·전문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자구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신 마케팅 기법 도입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고객에게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된다.

앞으로 국내보험시장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물건의 보험가입은 보험중개사가 전담하고, 개인보험이나 가계성보험 판매는 대리점이 맡는 이원체제가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재보험, 『대한재보험 25년사』 대한재보험(주), 1988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보험감독원, 1998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The Law and Economics of Framework Agreements, Gian Luigi Albano, Cambridge Publishing, 2016

<연구논문>

이성남,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기업법연구』제28권 제2호, 2014,

유주선,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7권 2호 2013

Marc J. Pearlman and Jason P. Minkin, “The Role of the Reinsurance

Intermediary: Duties and Liabilities” 2003.4. Coverage Vol. 13, LexisNexis.

NY. American Bar Association.

<기타자료>

보험개발원 통계연감 2015년 발간

보험개발원 KIRI Weekly 2015.7.6.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지 2016년 6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5년 발간

Swiss Re Sigma ‘World Insurance in 2014’ 2015. No.4.

Clyde & Co ‘Insurance and Reinsurance’ Update, Clyde & Co, February 2015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commercial-insurance>

https://www.kidi.or.kr/stats/general_result.asp

<https://en.wikipedia.org/wiki/Underwriting>

<http://resources.lawinfo.com/insurance/kentucky/what-does-solicit-mean-in-insurance.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778271>

https://en.wikipedia.org/wiki/IFRS_17

https://en.wikipedia.org/wiki/Insurance_broker

<http://www.insweek.co.kr/>

<http://www.ikiba.or.kr/>

http://www.insweek.co.kr/dictionary/view.php?ind_sel=han&index=비}&no=406&qu=

<http://ccs-agreements.cabinetoffice.gov.uk/contracts/rm3731>

<Abstract>

The Role and Legal Issues of Insurance Brokers in Korea for the Above Cut Growth of Commercial Insurance

Shin, Ho Chul

The Korean commercial insurance market is ranked 18th (if you count long-term insurance as life insurance) in the world insurance market, which is disappointing when compared with the 7th place ranking of Korean life insurance.

Top priority must go to the advancement of the insurance solicitation structure in order to encourage the robust development and persistent growth of the future Korean commercial insurance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focus needs to be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insurance broker, as is the situation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the broker's usefulness and efficiency has been extensively proven.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insurance broking business and enumerates the cases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commercial insurance broker, which is an essential role when dealing with the professional and highly advanced nature of underwriting in the commercial insurance.

The Korean insurance broking business takes a meager domestic market share, even falling short of 1 percent whereas the insurance brokers in developed countries retain a dominant market position as being core to insurance solicitation. In the future, for a Korean insurance broker to conduct its deserved function,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tability and insufficiency of the Korean legal framework must be addressed.

For this, we have proposed a variety of specific measures:

- In the first instance, we propose that the articles of the insurance broking business stat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IBA) should be separately categorized as an independent and divided se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status of the insurance broker.

- Our next proposal is that the grounds articles, which enables The Korean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KIBA) to effectively discipline the soliciting violations of KIBA member brokers, should included in regulation, such as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providing a foundation in IBA to form an ethics committee within KIBA.

Our other proposals include:

- measures of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the insolvency of insurance brokers by supplementing and/or reinforcing business standards for certified insurance brokers (article 36 of enforcement decree of IBA).
- measure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surance brokers by granting the insurance brokers the rights to receive premiums and the insured's notification prior to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during the policy period.
- measures of allowing the insurance broker to conduct loss adjusting business as a supplementary job.
- measures of repealing the restraints on the insurance brokers' business scope by allowing the insurance broker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of insurance of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without discrimination, by revising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insurance broker is essential to the Korean commercial insurance market, This is, because an insurance broker is the sole organization on the side of the insured (a corporate), who is able to carry out the efficient negotiation with an insurance company, armed with professional and highly advanced knowledge of underwriting within the insurance soliciting channels.

In order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o pursue a cut above growth and compet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insurance market within developed countries, we opine that the considerate side supports of concerned authorities are direly needed so that the insurance brokers may conduct a business smoothly without gaps in the insurance legal process.

Key Words : commercial insurance, insurance broker, insurance solicitation, claim collection,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P&I broker.